

요약문으로 본

독도의 역사 1500년-5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편)

II. 독도의 역사 개관-19~20세기-2

5. 러일전쟁과 일본에 의한 독도강제편입

1) 1889년, 조일 간에서 '조일양국통어(通漁)규칙'이 체결되어 양국 연안에서의 상대국 어업이 가능해졌다. 그러므로 울릉도 주변에서 조업을 시작한 일본인들이 독도에서도 전복이나 우뚝가사리 등을 채취했는데 그것을 울릉도로 가져와서 일본으로 수출했다. 그때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수출 세를 냈는데 이 사실이 조선(한국)이 독도를 과세라는 수단으로 일본보다 먼저 실효지배 했다는 증거가 된다.

2) 1903년 오키섬에 거주한 일본인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郎)가 독도에서 강치를 잡기 시작했다.

3) 1904년2월, 러일전쟁이 시작되었다. 일본군이 중국 여순을 기습공격 했는데 일본군 중 일부는 동시에 서울로 침입해 한국에게 협정을 요구했다.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된 것이다.

4) 1904년2월27일, 한국과 일본은 전쟁 시에 한국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본이

차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일의정서'를 맺고 관보에 공표했다.

5) 1904년9월2일, 일본군이 울릉도에 군사용 망루를 완공시켰다.

6) 1904년9월5일, 한국과 일본이 '제1차 한일협약'을 맺고 관보에 공표했다. 이 협약으로 한국의 재무고문과 외교고문을 일본이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바로 이 협약으로 일제가 한국의 외교와 내정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을사늑약' 강제체결의 약 1년 전에 일본은 이미 '제1차 한일협약' 으로 한국 지배를 확고하게 만들 생각이었다.

7) 1904년9월25일, 일본군함 니이다카(新高)가 일본에서 말하는 '량코도' 를 한국인이 '독도'(獨島)라고 쓴다고 정확히 기록했다. 이것은 당시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혼란을 겪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지 못했던 일본과 비교할 때 한국 측이 '독도'라는 명칭을 결정해 일본보다 먼저 독도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증거가 된다.

8) 1904년9월29일, 독도에서 강치 사냥을 해오던 오키섬의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郎)가 일본해군 수로부의 사주로 '량코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일본정부에 제출했다. 이때 내무성은 량코도가 한국영토일 가능성이 있고 량코도를 편입해 버리면 서양열강들이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요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외무성은 때가 때인 만큼 빨리 량코도를 일본영토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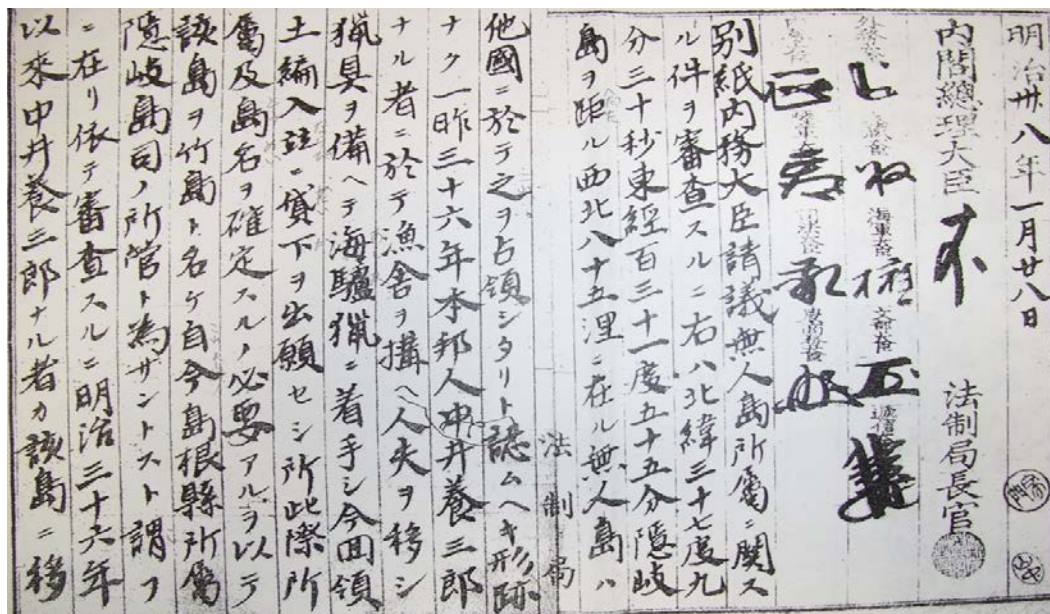
9) 1905년 1월, 외무성이 다른 부처를 설득하였고 량코도(독도)의 일본영토편입이 내각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었다. 독도를 무명이자 무주지, 즉 주인이 없는 땅으로 하여 이름을 죽도(다케시마)로 정했다. 그 이유는 당시 울릉도를 송도(마쓰시마)로 불렀기 때문에 옛날에 일본인이 죽도(다케시마)라고 불렀던 섬이 바로

량코도였다는 잘못된 얘기를 시마네현 오키도사가 정부에 보고했기 때문이다.

10) 1905년2월22일, 일본정부로부터 독도를 편입시켰다고 통보를 받은 시마네현은 시마네현(島根県)고시 제40호를 반포하여 '다케시마(독도)'를 시마네현 오키도사(隱岐島司) 소관 하에 두었다.

11) 1905년 6월, 일본정부는 군함 하시다테(橋立)를 독도에 파견하여 망루공사에 대해 조사하게 했다. 1905년8월, 일본은 독도에 망루를 완성시켰다.

- 1905년 1월28일, 일본정부는 독도를 **무명, 무국적(무주지)의 무인도로 규정**, 원래 울릉도의 이름이었던 다케시마를 착각으로 인해 독도의 이름으로 하여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 편입시켰다**.



12) 1905년7월, 일본은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고 일본이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는 대신, 미국이 일본의 한국지배를 인정한다고 약속했다. 영국은 이 내용을 승인했다.

13) 1905년9월, 러일 간에서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체결되었고 그 제2항은 러시아가 일본에 대해 한국지배를 인정한다는 문구로 작성되었다.

14) 1905년11월, 서양열강과 청나라의 간섭을 차단시킨 일본은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을 한국에 강요하여 강제적으로 체결시켰다. 이후, 고종의 밀사파견이 본격화되었다.

6. 독도편입을 알리러 온 시마네현과 헤이그 평화회의

1) 을사늑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해 한국을 사실상 일본의 지배 하에 둔 일본정부는, 이제 한국에 대해 독도편입 사실을 비밀로 할 이유가 없어졌다.

2) 1906년3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조사단' 이 독도를 조사한 후 울릉도에 들렀다. 조사단은 울도 군수 심흥택에게 '량코도가 일본영토가 되었다'고 구두로 전달했다. 심흥택은 '일본인들이 본군 소속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었다고 한다'고 강원도로 보고했고 강원도는 의정부에 보고를 올렸다.

이에 의정부는,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었다는 얘기는 사실무근. 일본인들의 동향을 주시하라'라는 '지령 제3호'를 하달했다.

그런데 한국이 독도편입에 대해 일본에게 항의를 못했다. 그러나 당시는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황제인 고종자체가 일본에게 한마디도 항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카이로 선언(1943)'이나 '포츠담 성언'으로 침략과정에서의 영토편입은 무효가 되어 있다.

3) 1907년 3월, 고종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하여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는 밀서를 공표하게 하기로 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4) 1907년 7월, 일본정부는 고종이 헤이그 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낸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기를 한국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게 요청했고 그 결과 고종황제는 퇴위 당했다. 그리고 한국군대가 해산당했다.

5) 1907년 7월25일, ‘제3차 한일협약(정미7조약)’이 관보에 공표되었고 일제는 대한제국의 내정까지 완전히 장악해 버렸다. 이런 일제에 의한 침략과정에서 일어난 독도편입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된다.

6) 1908년, 한국정부는 『증보문헌비고』를 출간했다. 그 속에서 <울릉, 우산 모두 우산국의 땅, 우산은 즉 왜가 말하는 송도(=독도)다(鬱陵于山皆于山國地于山則倭所謂松島也)>라는 주장을 다시 수록했다. ‘동국문헌비고’(1770), ‘만기요람’(1808)에 쓰인 내용과 똑 같은 내용이지만 한국은 ‘병합’ 직전까지 일제에 대해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주장한 것이다.

7) 1910년 8월,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이 관보에 실렸고 1945년 8월15일까지 약 36년간의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다.